

제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13605 판결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136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가단630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신은향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변론 종결2024. 4. 17.

판결 선고2024. 6. 5.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가단6302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1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금 166,585,944원과 손해배상금 5,532,175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부분 청구취지를 57,590,045원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K로부터 서귀포시 D, E, F 지상에 있는 'L' 연립주택 15개동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8.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4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7. 3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공사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다. 한편 2018. 12.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8. 31. A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간이회생절차개시 및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309,018,3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피고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297,199,085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309,018,319원이고,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97,199,085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251,428,274원(= 309,018,319원 / (309,018,319원 + 297,199,085원) × 493,240,000원1))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한 309,018,31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초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57,590,045원(= 309,018,319원 - 251,428,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18.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더니 2019. 2월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2018. 12. 14. 20:00경 M에서 원고 대표 B, 피고 대표 N,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O이 만나 이 사건 공사를 합의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1, 38, 39호증, 을 제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8차 기성금 청구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L 정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2018. 12월경까지의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정리한 'L건물 P 신축공사 정산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피고에게 공사현장 복귀를 촉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는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합의하에 2018. 12. 15.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여 2018. 12. 16.부터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정산서에는 피고가 2018. 12. 중순경까지 지출한 내역 또는 해당 기간의 급여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O도 '원고 대표 B, 피고 대표 N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사금액 관련 이견이 있었고, 피고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 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증언하였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⑤ 한편 2018. 12. 15. 이후에도

피고 대표자 'N'이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갑 제22 내지 25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작성 형식이나 서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 측 발주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그에 관한 약정서(갑 제38, 39호증)만 뒤늦게 2019. 2월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서 작성일자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8. 12. 15.경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에 관한 증명책임은 초과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일인 2018. 12. 15. 기준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통상 기성고 비율은 감정 절차를 통해 산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8. 25.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기성고 감정신청이나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대금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정률 현황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의 현장 사진이나 감리, 건축사 등을 통한 기성부분 검사원 등도 제출한 바 없어, 피고의 미시공 부분과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309,018,3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피고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297,199,085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309,018,319원이고,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297,199,085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동일한 단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위와 같이 동일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606,217,404원(= 309,018,319원 + 297,199,085원)인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인 448,400,000원을 상당히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 산정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갑 제3호증 내지 10, 11, 44, 48, 50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차 내지 8차 기성금에 관한 기성금수령확인서 또는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8차 기성청구서상 기성누계금액이 309,018,31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금액은 대체로 계좌이체내역이나 세금계산서로 뒷받침 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표1]

1차	2018. 8. 2.	20,000,000	
2차	2018. 8. 17.	10,000,000	30,000,000
3차	2018. 9. 6.	115,567,785	145,567,785
4차	2018. 9. 10.	3,090,000	148,675,785
5차	2018. 9. 21.	32,870,000	181,527,785
6차	2018. 10월경	13,870,714	195,398,499
7차	2018. 11월경	58,203,820	253,602,319
8차			309,018,319

그런데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비가 기성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체 등에 직불한 금액 중 피고의 관여나 통제와 무관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사의 기성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원고가 피고 측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일 뿐 해제 당시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요 공사비가 아닌 점, ② 이 사건에 제출된 기성청구서는 6차와 8차에 대한 것뿐인데, 그중 공사 집계표가 첨부된 것은 6차 기성청구서뿐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공사 집계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 제출된 각 기성금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집행한 금액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가 그와 같은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④ 실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96,735,292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7,409,284원)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현장소장 O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O도 원고에게 직접 노무비를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점, ⑥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에 직접 자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위 거래처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 중 주식회사 Q, 주식회사 S는 원고의 소재지와 동일한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주식회사 R도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런데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자재 등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등 그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⑧ 3차 기성금 수령확인서(갑 제6호증)상 자재대금 중에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전인 2018. 7. 4.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기 전의 지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수령확인서와 기성청구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매월 산정한 기성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 12. 15. 당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309,018,319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미시공 부분 완성을 위하여 297,199,085원(= H 36,220,800원 + 주식회사 G 123,420,000원 + 주식회사 Q 2,701,435원 + 주식회사 T 825,000원 + 주식회사 U 4,803,042원 + 주식회사 R 660,000원 + V 1,087,900원 + 인건비 127,480,90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피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로서 기성고 비율 산출을 위해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소요될 객관적인 공사비가 아니므로 원고 주장의 위 지출 금액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 14, 17, 18, 21, 22 내지 24, 26 내지 29, 34, 4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아래 제3항에서 주장하는 손해 내역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지 피고의 미시공 부분 완성을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시공 부분 완성을 위한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2019. 1. 11. 20,460,000원 부분)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H과 체결한 납품계약상 시스템분배기의 규격, 수량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사양과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역과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정산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보수로 2,7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없이 정산서를 송부하였고,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초과 수령을 문제 삼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4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대부분 피고의 하청업체 등에게 직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성고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성고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등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8. 12. 20. 피고가 고용한 O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추가로 자재 등을 구입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5,532,175원(= 주식회사 Q 2,701,435원 + 주식회사 T 825,000원 + 주식회사 W 1,345,740원 + 주식회사 X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기로 하여 2018. 12.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1, 30, 3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정가원

판사이승욱

1) 약정 공사대금 448,4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